



금응위원회

## 보도참고자료

• 미래창조 금융

•따뜻한 금융

보도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

배포 2016.7.12(화)

• 튼튼한 금융

책 임 자 이 지금

금융위 공정시장과장 이 석 란 (02-2100-2680)

담 당 자

이 동 욱 사무관 (02-2100-2681)

## 제 목 : 서울경제 7.13일자(가판) 「외감법 독소조항이 분식 회계 키워」 보도 관련

## 〈 보도내용 〉

- □ 서울경제는 '16.7.13일(수, 가판) 「외감법 독소조항이 분식회계 키워」 제하의 기사에서
- "특정 기업체의 분식회계를 회계법인이 회계감사에서 적발해내지 못했고 이에 따라 대출금 미회수 등의 피해를 금융기관이 입었다 해도 손배소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이 회계법인의 업무해태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다. … 이 단서조항은 지난 2008년 외감법에 끼워졌다."….
- o "금융권은 이 같은 단서조항이 사실상의 독소조항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."라고 보도

## 〈 참고사항 〉

- □ 상기 기사에서 언급된 「외감법」 제17조제5항은 '06.10월 개정 발의되어 '08.3월에 국회 통과된 법안으로
- o 회계법인이 부실감사 등으로 **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**하여 손해 배상을 할 책임이 있는 경우, (법 제17조제2항)
- **회계법인**(피고)에게 부실감사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부여되지만, (법 제17조제5항 본문)
- **피감회사 또는 금융회사**가 원고인 경우에는 **원고**에게 입증책임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임 (법 제17조제5항 단서)

- □ 동법 개정 이전에는 부실감사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과관계와 입증책임을 **회계법인(피고)**에게 부여하였음
- 이는 일반 소액 투자자의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, 이들 보호를 위해 회계법인 (피고)에 대한 입중책임의 전환\*을 인정한 것임
  - ※ 통상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'원고'에게 입증책임이 부여됨
- □ 그러나, **금융회사**는 일반 투자자에 비해 많은 정보와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아무런 입증책임을 지지 않는다면,
  - **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전가 등 도덕적 해이**가 우려되어 **금융회사(원고)**에게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지도록 한 것임
    - ※ 참고 : 외감법 일부개정안 발의안(2006.10.13, 이종구 의원)
      외감법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(2008.2월, 국회 재경위)
- □ 즉, 외감법상 손해배상 관련 조항은 **소액투자자에 대한 보호는 두텁게** 하면서, 부실대출 등에 대한 **금융회사의 역할과 책임도 강화**하려는 것으로,
  - ㅇ 부실감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것은 아님
- □ 현재 정부는 회계법인의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외감법 전부개정안 마련 등 **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**에 있으며,
  - ※ 「부실감사 방지를 위한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」 (6.13)
  - o 금년 하반기 중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「회계투명성 및 신뢰성(책임성) 강화방안(假)」을 마련할 계획임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